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105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6일, 이효원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효원 의원)

1. 제안이유

-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을 조례에 명시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을 시장의 책무로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7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태권도 진흥 사업에 추가하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나. 법적 근거 규정

- 태권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5호1)의 체육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2),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의 진흥 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가 존재함.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사업 현황

- 동 조례안(2021.9.30. 제정·시행)을 근거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태권도 관련 사업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관광산업과의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본예산 1억 2백만원)은 「관광진흥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태권도를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운영 중임.
- 특히 올해 청와대 전면개방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태권도 공연을 제공하고자 2022년 제2차 추경을 통해 2억 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또한 “2023년 태권도 상설공연 기본계획” (2022.6.)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 및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를 문화관광 상품화하고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음.

라. 태권도 발전과 진흥사업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동 개정안은 태권도 진흥사업에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규정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 ----- ---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설> |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

| | |
|---------|-----------------|
| 7. (생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 조례 제4조⁴⁾는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개정없이도 태권도 발전·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집행기관인 서울시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는 체육진흥계획 (2024~2029)을 2023년에 수립할 예정이고 태권도 종목의 대한 계획 수립이 포함될지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태권도 진흥지원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태권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동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4)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내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 의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105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6일
발 의 자: 이효원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원중,
문성호,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종환,
이희원, 허·훈 의원(11명)

1. 제안이유

-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개발을 조례에 명시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태권도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책무를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u>7.</u> (생략)</p> <p>② (생략)</p> | <p>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u></p> <p><u>8.</u>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